

2016년 건강검진 시행 계획

□ 배 경

- 매년 정기검진을 통한 건강체크로 직원의 건강수준 제고
- 연령대별 검진단가 준수로 연령수준별 정밀한 건강검진 시행

※ 관련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(건강검진)
-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(건강진단)
- 단체협약 제72조(건강진단)

□ 추진방향

- 미검율 Zero化등 산업안전보건법 철저 준수를 위해 사후정산 시행
 - 직원·배우자 대상 건강검진 先 포인트 지급 → 사후정산으로 변경
 - 직원 연령대별로 동일한 단가수준의 검진시행
 - A형(30만원), B형(20만원), C형(15만원) 대상자의 검진 유형별 하향검진 불가
- 직원 정신질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검진 대상자 스트레스 검사 적극 권장
 - 2016년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스트레스 검사 시행
 - ERP 건강검진 신청 시 팝업을 통해 스트레스 검사 안내(검사사이트 URL 연결)
 - 검사 실시 후, 즉시 개인 메일로 결과 확인
- 신청기간 내 ERP시스템에 건강검진 신청완료 필수 (배우자 포함)
 - ERP 시스템 내 신청 없이 검진병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검진예약 불가
 - ERP 신청없이 직접 병원 방문 시 검진병원이 대상자 신원 파악 불가
 - 검진대상자 확인 편의제공을 위해 검진병원에 검진 미신청 직원·배우자 정보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검진비용 정산 이슈 발생

□ 검진개요

○ 검진대상 : 32,343명(직원 22,979명, 배우자 9,364명)

○ 검진비용 (2016.3월말 현재)

구분	검진유형	검진비용	비고
만 50세 이상	A형	30만원	'66.12.31 이전
만 35세~50세 미만	B형	20만원	'67.1.1~'81.12.31
만 35세 미만	C형	15만원	'82.1.1 이후
배우자	D형	15만원	

※ 배우자: 직원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 및 ERP 內 의료비 대상 등재된 배우자 限 (등재 마감 기준일: 2016.4.31)

○ 검진일정

주요 내용	일정	비고
• 2016년 건강검진 전사공지	4.4(월)	전사담당자
• 건강검진 대상자 시스템 입력	4.5(화)	전사담당자
• 계약 검진기관 ERP 등록	~ 4.7(목)	기관담당자
• 개인별 검진병원 및 검진항목 신청	4.11(월)~4.21(목)	개인별
• 건강검진 시행	4.29(금)~10.31(월)	개인별
• 정산 및 검진결과표(사후관리소견서)관리	완료일~11.30(수)	기관담당자

※ 신청경로: KATE -> BIT ERP -> 개인업무 -> 복지후생 -> 신청 -> 건강검진

□ 검진기관 및 검진항목

○ 검진기관 선정

- 공단 지정 검진기관 중 5대암(위암·간암·대장암·유방암·자궁경부암) 이상 검진가능 기관 선정 필수(부문/실, 본부 단위 검진병원 계약)
- 직원가족 및 퇴직사우도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진 가능하도록 계약 (검진비용은 직원가족 및 퇴직사우가 직접 사전결제)
- 건강검진 서비스 품질, 직원 검진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
 ※ 기관별 자체 만족도 평가를 통한 검진기관 수 조절 가능(노사협의 필수)

○ 검진항목

- 검진 유형 : 30만원(A형) / 20만원(B형) /15만원(C형,배우자)
- 검진 기본항목은 최소화하고 선택항목은 최대화
- 뇌심혈관질환(심근경색·뇌졸중·협심증 등)관련 검진 항목은 가능한 확대

□ 건강검진 관리강화 및 정산

○ 건강검진 관리강화

-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Risk 제거를 위해 건강검진 미검진자는 사유서 징구
- 미검진자 발생기관은 경영지원실 주관 산업안전특별점검 시행

○ 특수검진 병행 시행(추후 별도문서 발송)

- 대상: 밀폐공간(맨홀) 작업자, 야간(교대) 근무자
- 특수검진 대상자는 특수검진 가능병원 선택(희망시 일반검진기관 선택가능)

○ 건강검진 제외 대상 (증빙서류 제출 필수/ 담당자가 ERP에 증빙서류 등록)

- 파견계약직, 재적전출자, 인턴사원, 신입사원
- 건강검진 기간(4.11~10.31)중 계속 해외파견중인 직원
- 당해 년도 임신직원(산업안전보건법 내 명시된 검진항목을 산전검사한 경우 限)
- 중증질환 치료직원(산업안전보건법 내 명시된 검진항목을 치료중 검사한 경우 限)

○ 검진비용 정산

- 예산과목: 건강진단비(전자계산서 지출결의)
- 부가세법상 개인/면세검업 사업자인 경우 대가지급 시 사업소득세 3%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후 지출결의

○ 정산 시 유의사항

- 검진前에 타기관 전출 시에는 전입기관에서 정산처리
- 검진後에 타기관 전출 시에는 전출기관에서 정산처리
- 소속변경 신청자에 대한 정산은 "소속변경 승인기관"에서 '필히 정산'처리
- 지병으로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은 경우: 건강검진 수검 증빙자료 확인 및 등록 후(기관담당자) 실 검진비용 포인트로 지급(사원유형별 검진단가 限)

□ 사후관리

○ 관리책임자

- 검진결과표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
- 2차 검진(법적 필수 시행) 대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지도 필수

○ 기관 검진담당자(건강진단 결과표 사업장 5년간 보관)

- 기관별 검진현황은 ERP 시스템 관리 및 경영지원실 보고(추후 양식 안내)

※ 건강검진 미 실시 시 과태료 부과

• 과태료 부과 기준(산업안전보건법)

*위반횟수에 따라 부과

구분	위반행위	법조항	과태료 금액 (만원)			비고
			1차	2차	3차	
사업주	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	제72조 제3항 제5호	5	10	15	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
근로자	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	제72조 제5항 제2호	5	10	15	

•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 결정

[사례1] 근로자 ○○○에게 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,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 실시 하였음에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☞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 처벌

[사례2] 근로자 ○○○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 안내하고, 제1차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(서류 또는 진술 등)된 경우

☞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,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 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○○○을 처벌

[사례3]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인 근로자 ○○○에게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[사례1] 또는 [사례2]의 경우

☞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[사례1]과 같이 개별안내 등이 소홀한 경우는 사업주를, [사례2]와 같이 2회 이상 개별 안내한 경우는 근로자 ○○○을 처벌